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5898	노종면의원	'24. 11. 26.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3.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4.) 상정 및 축조심사
	2208043	박성훈의원	'25. 2. 11.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5.11.24.) 상정 및 축조심사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4.)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의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32조).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공동활용”을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조제1항·제18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u> <u>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u> <u>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u> 6. ~ 9. (현행과 같음) <u>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u> <u>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u> <u>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u> <u>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u> <u>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u> <u>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u> <u>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u> <u>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u> <u>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u> <u>를 말한다.</u>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u>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u> <u>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u> <u>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u> <u>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u> <u>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u>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u>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u> ----- ----- ----- -----

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생략)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
-제6항-----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을
 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
 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
 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정

부납부기술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없이 제18조제2항에 <u>따른 기</u> <u>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u> <u>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u> 6. (생 략) ② ~ ⑥ (생 략)	-----<u>따라 정</u> <u>부납부기술료</u>-----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